작은도서관 기초 회계 12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무국 김혜령

PRESENTATION

순서

01.회계는 용어, 용어는 실제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과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예시

02.세금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에 대한 설명

03.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영수증
후원금 처리

04.Q&A

PRESENTATION

01.회계는 용어, 용어는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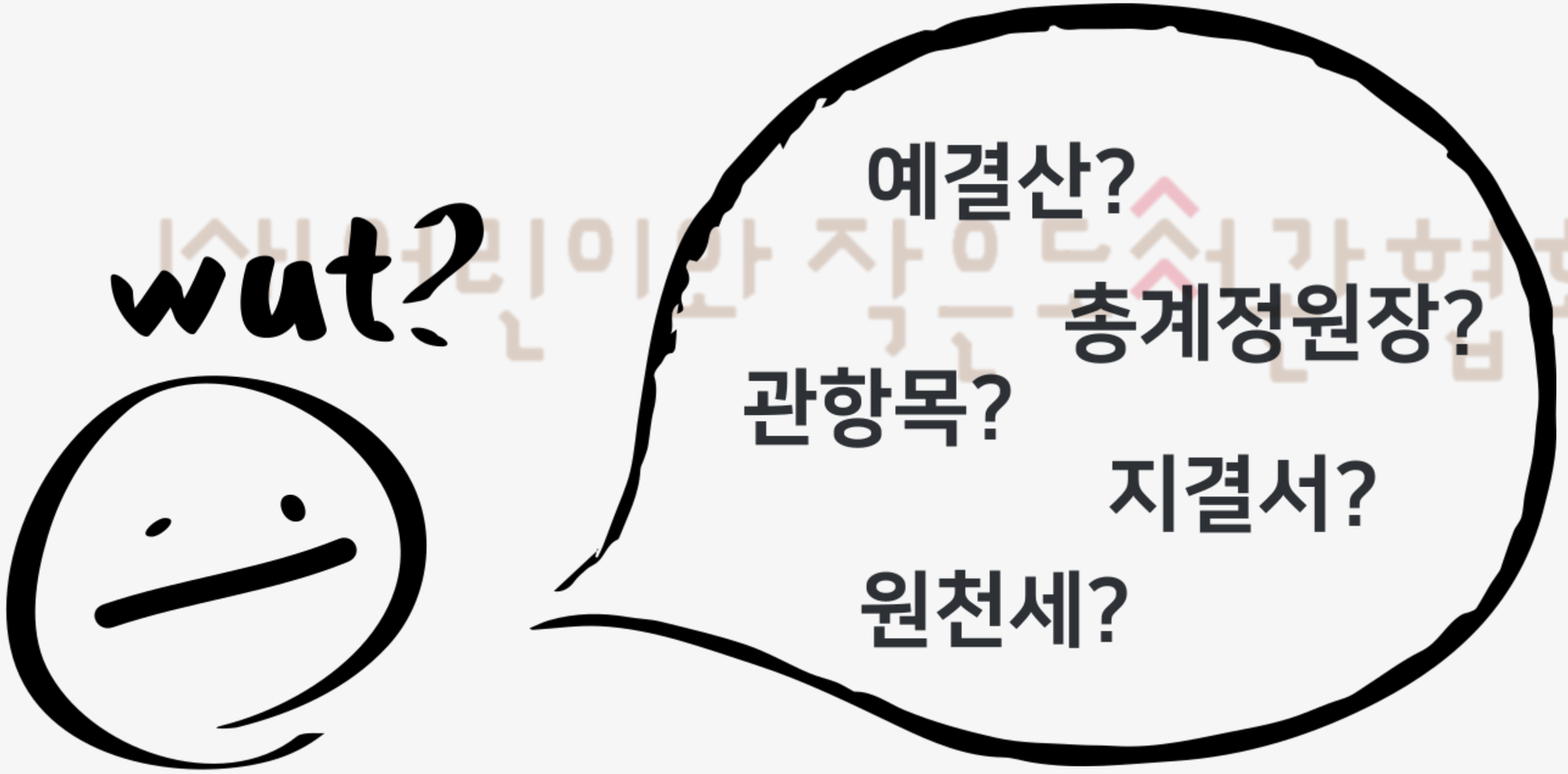

관항목?

관항목 (款項目) :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이다.

관항목의 실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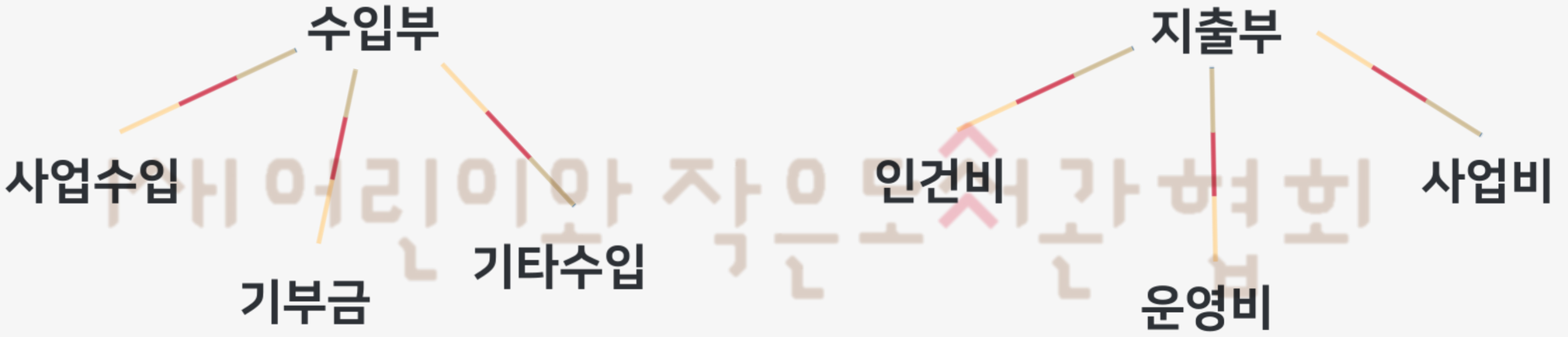

- 회계는 밀리면 안되고 시기를 정해서 (ex.매월 초에 지난 달의 회계정리) 처리해야 한다.
- 관항목을 결정할때는 신중해야 한다.
- 도서관 마다 다를 수 있다.

예산								결산							
수입부				지출부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산	관	항	목	예산	관	항	목	예산	관	항	목	예산
수입	사업수입	딸기	1,000,000	지출	인건비	급여	3,000,000	수입	사업수입	딸기	1,000,000	지출	인건비	급여	3,000,000
		사과	2,000,000			사회보험 부담금	1,000,000			사과	2,000,000			사회보험 부담금	1,000,000
		수박	3,000,000		운영비	회의비	1,500,000			수박	3,000,000		운영비	회의비	1,000,000
	기부금	지정	4,000,000			임차료	2,000,000		기부금	지정	4,000,000			임차료	2,000,000
		비지정	5,000,000			소모품비	1,600,000			비지정	3,000,000			소모품비	50,000
	기타수입	이자 등	100,000		사업비	사업 진행비	6,000,000		기타수입	이자 등	50,000		사업비	사업 진행비	6,000,000
계			15,100,000	계			15,100,000	계			13,050,000	계			13,050,000

- 한국의 예산회계법은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

- 예결산: 예산+결산

- 예산 금액과 결산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수입계와 지출계는 금액이 같아야 한다.

총계정원장?

총계정 원장

總計定 元帳

2021년 4월 총계정원장

결재	담당자	사무총장	이사장

수입부						
날짜	항	목	내용	수입	증빙	비고
4월 5일	사업수입	회비	A도서관	5,000	수입2104-01	
4월 12일	사업수입	가입비	B도서관 가입비	5,000	수입2104-02	
4월 15일	기타수입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지원금	21,000	수입2104-03	
4월 15일	사업수입	가입비	C도서관가입비	5,000	수입2104-04	
4월 15일	사업수입	회비	C도서관연회비	22,000	수입2104-05	
4월 20일	사업수입	기타수입	20년 법인세 환급	4,605	수입2104-06	
4월 20일	사업수입	회비	D도서관	5,000	수입2104-07	
4월 23일	사업수입	회비	E도서관	2,000	수입2104-08	
4월 26일	사업수입	이사회비	세모 이사	3,000	수입2104-09	
4월 26일	사업수입	회비	F도서관	3,000	수입2104-10	
4월 27일	사업수입	이사회비	네모 이사	5,000	수입2104-11	
4월 27일	사업수입	이사회비	동그라미 이사	3,000	수입2104-12	
4월 30일	사업수입	이사회비	별표 이사	3,000	수입2104-13	
4월 27일	사업수입	회비	CMS도서관회비	211,000	수입2104-14	CMS월별통합
4월 27일	사업수입	이사회비	CMS이사회비	159,471	수입2104-15	CMS월별통합
4월 27일	사업수입	자료회원회비	CMS자료회원회비	9,000	수입2104-16	CMS월별통합
4월 27일	기부금	지정기부금	CMS지정기부금(수입)	2,490,890	수입2104-17	CMS월별통합
금월 수입 계				2,956,966		
전기 이월액				1,042,944		
수입 합계				3,999,910		

PRESENTATION

01.회계는 용어, 용어는 실제

총계정원장?

매월 통장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관항목(계정)에
맞춰 정리

지출부						
날짜	항	목	내용	지출	증빙	비고
4월 1일	운영비	소모품비	인터넷상거래	2,684	지출2104-01	
4월 1일	운영비	운반비	택배발송비	8,300	지출2104-02	
4월 3일	운영비	통신비	Amazon_AWS	187,553	지출2104-03	
4월 8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8일 점심	2,660	지출2104-04	
4월 9일	운영비	지급수수료	제증명수수료	100	지출2104-05	
4월 12일	운영비	운반비	우체국_등기 발송	4,400	지출2104-06	
4월 14일	운영비	임차료 및 관리비	임대료	30,000	지출2104-07	
4월 16일	운영비	통신비	03인터넷요금	2,442	지출2104-08	
4월 16일	운영비	통신비	03웹하드요금	3,850	지출2104-09	
4월 16일	운영비	통신비	03전화요금	2,243	지출2104-10	
4월 20일	운영비	수도광열비	도시가스04	1,332	지출2104-11	
4월 20일	운영비	광고선전비	명함제작비	2,530	지출2104-12	
4월 20일	운영비	통신비	회계프로그램요금	5,500	지출2104-13	
4월 21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생수구입	2,500	지출2104-14	
4월 22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22일 점심	1,880	지출2104-15	
4월 23일	인건비	급여	상근인건비	150,000	지출2104-16	
4월 23일	인건비	급여	상근인건공제계	12,367	지출2104-17	
4월 23일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사업장부담금	12,642	지출2104-18	
4월 26일	운영비	운반비	택배발송비	700	지출2104-19	
4월 28일	인건비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	35,935	지출2104-20	
4월 29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29일 점심	3,400	지출2104-21	
4월 30일	운영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7,206	지출2104-22	
4월 30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30일 점심	2,300	지출2104-23	
4월 30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30일 간식비	1,100	지출2104-24	
4월 30일	운영비	지급수수료	수수료	50	지출2104-25	
4월 27일	운영비	지급수수료	4월cms수수료	2,747	지출2104-26	CMS월별통합
4월 27일	사업비	도서관지원사업비	CMS지정기부금(배분)	2,413,552	지출2104-27	CMS월별통합

총계정원장?

항목별 집계로
정리하여 매월
각 항목에서 얼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2021년 4월 항목별 집계

지출부					
날짜	항	목	내용	금액	합계
4월 23일	인건비	급여	상근인건비	150,000	
4월 23일	인건비	급여	상근인건공제계	12,367	**162,367**
4월 23일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사업장부담금	12,642	**12,642**
4월 28일	인건비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	35,935	**35,935**
4월 8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8일 점심	2,660	
4월 21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생수구입	2,500	
4월 22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22일 점심	1,880	
4월 29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29일 점심	3,400	
4월 30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30일 점심	2,300	
4월 30일	운영비	복리후생비	4월 30일 간식비	1,100	**13,840**
4월 9일	운영비	지급수수료	제증명수수료	100	
4월 30일	운영비	지급수수료	수수료	50	
4월 27일	운영비	지급수수료	4월cms수수료	2,747	**2,897**
4월 1일	운영비	운반비	택배발송비	8,300	
4월 12일	운영비	운반비	우체국_등기 발송	4,400	
4월 26일	운영비	운반비	택배발송비	700	**13,400**
4월 20일	운영비	광고선전비	명함제작비	2,530	**2,530**
4월 3일	운영비	통신비	Amazon_AWS	187,553	

실제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A도서관 예시

지출 발생

품의서

어떠한 일의 집행을
시행하기에 앞서 결재권자에게
특정한 사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

지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원칙
현금 결제 X
부득이한 현금 지출시,
도서관 내부 규정이 필요.
증빙 가능한 업체에 지출

지결서

지출결의서 작성.
날짜, 부서명, 내역, 청구인,
세부내역, 금액란, 증빙 등

증빙자료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업체 정보, 행사 일지, 강의비
확인서 등

지출 SET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지출) 품 의 서

문서번호	모야_품의21-040501			
시 행 일	2021.04.05			
제목	210405 회의 식비			
금액	일금 오만원정 (₩50,000)			
과 목	관	항	목	세목
	관리운영	업무추진비	회의비등	-
(과목번호)				
지급근거				
	1. 관련 :			
신청내역	가. 지급대상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실무단			
	나. 지급내역 : 210405 회의 식비			
	다. 세부내역			
	번호 / 이 름 / 사업자번호 / 금액 / 비고			
	1 / 도미노 / - / 50,000 / 카드			
	합계		50,000	

상기와 같이 (지출)품의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의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모야
지 출 결 의 서

부 서		사무국	결의서번호	모야_지출21-040501		
발 의	발 의 자	김혜령	발 의	2021.04.05		
	발의년월일	2021.04.05	지출년월일	2021.04.05		
계약	담 당	-	지급방법	계좌	현금	카드
	계약년월일	-				
조 사	담 당	-		○		
(검 수)	검사년월일	-				
과 목	관	항	목	세목		
	관리운영	업무추진비	회의비등	-		
(과목번호)	-					
발의근거	-					
적 요	210405 회의 식비					
공 급 자 (채 주)						
No	상호 (성명)	주소	지급은행	지출금액(원)	비고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계좌번호			
1	도미노	-	-	50,000		
	-	-	-			
합 계						
첨부	※ 증빙서류 : 영수증 ※ 별첨서류 : 없음					

지출결의서

영수증

계산서

입금증

⋮

증빙자료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계 A-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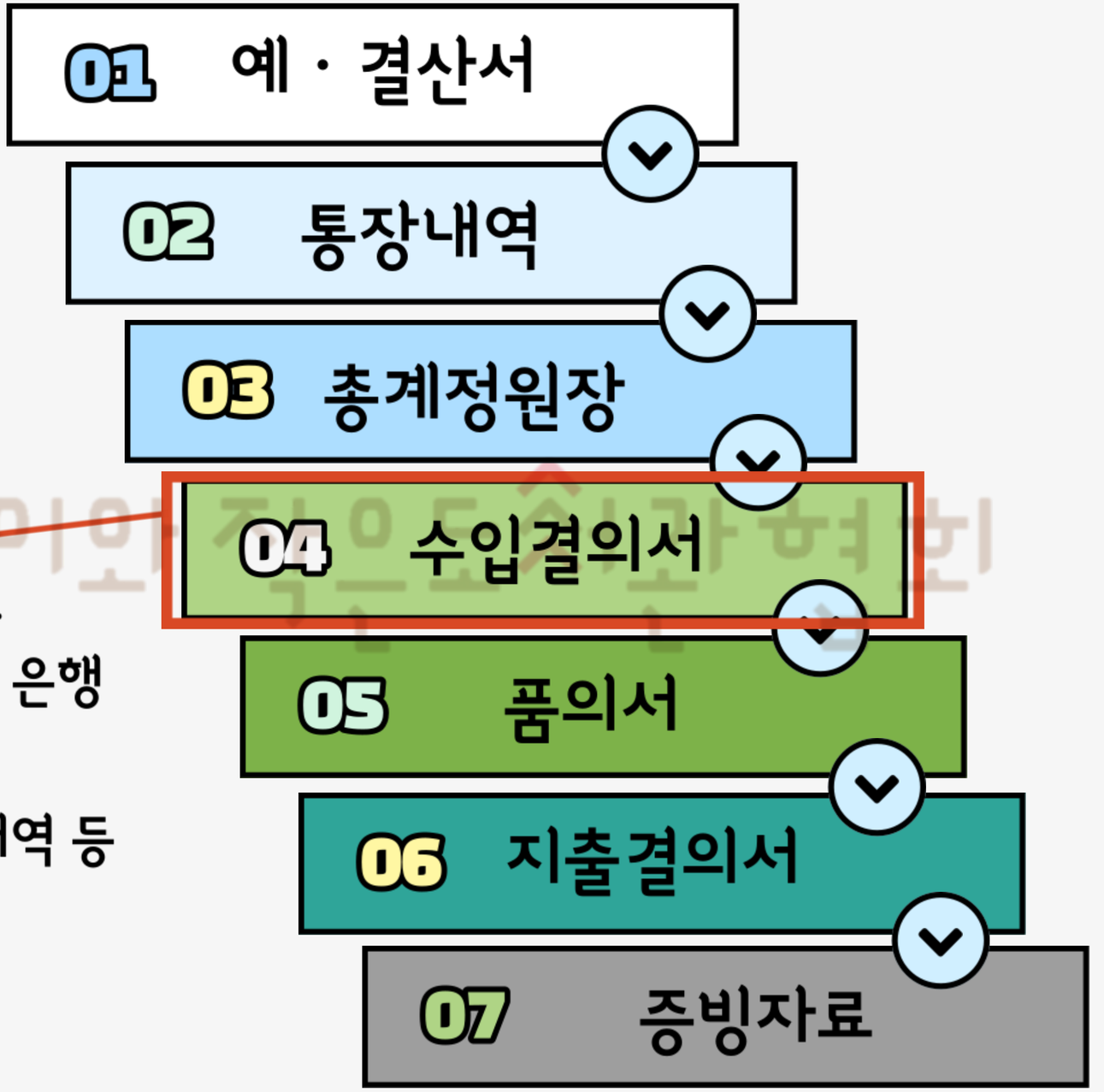

수입결의서는 품의서가 없다.
수입결의서의 증빙자료는 대체로 은행
전표(거래내역)으로 증빙.
ex)사업비 입금내역, 이자 수입 내역 등

PRESENTATION

02.세금신고 방법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일용근로소득

직원을 고용하되, 3개월 미만 근무조건으로 급여체계가 시간급 또는 일급 형태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받는 대가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원천세?

원천세 (源泉稅) :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 사업소득세 3% + 지방세 0.3%=3.3%
- 기타소득세 8% + 지방세 0.8%=8.8%

기타소득세

- 125,000원 이상 지급시, 세금 공제 필요

기타소득 원천세율(소득세 예수금) 계산 예시

출처 : 나

구분	2019년 이후
필요경비 공제율	60%
과세최저한 지급액	12만 5,000원 이하

구분	필요 경비율	기타소득금액	세액계산 (기타소득 세율20%)	비고
원고료로 개인에게 13만원 지급 시	(60%)	130,000 - (130,000 x 0.6) = 52,000	소득세 : 52,000 x 0.2 = 10,400 지방소득세 : 10,400 x 0.1 =1,040	최종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징수결과 130,000 x 0.088 = 11,440 실 지급액 : 118,560

새 어린이와 상은 도서관 협회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 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지급하는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지급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 3월 24일 지급, 4월 10일까지 신고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지방세는 위택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 부담

세이미의와 평은도서관협회

PRESENTATION

03.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작은도서관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후원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할 때,
서식은 인터넷에서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어 직인을 찍어
발행하시면 됩니다.

PRESENTATION
03.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사서리이와 작은도서관법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43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PRESENTATION

03.자주 묻는 질문

— 도서관 공간을 대여해주고 임차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작은도서관은 **영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있으면 안됩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임차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서관을 대관하는 상대방이 회계 증빙 자료를 요청할 때,
계산서 발행이 아닌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PRESENTATION

0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감사합니다.

문의처 02-388-5933